

2017년 시간급
6,470원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



- +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을 말하고,
- + **단속(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전용 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형태별 임금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아파트의 형편에 맞는 근로형태와 임금체계의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형태별 임금 지급의 기준시간 및 임금액

근로형태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 부여 기준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부여 기준		
		격일제(I형)	1일 2교대제(II형)		격일제	1일 2교대제	
근무시간대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7시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7시
휴게시간(-)	점심	1	1	-	1	1	-
	저녁	1	-	1	1	-	1
야간휴게시간(-)		3	-	3	4	-	4
실근로시간		19	11	8	18	11	7
야간근무가산시간		2.5	-	2.5	2	-	2
임금지급기준시간(A)		21.5	11	10.5	20	11	9
예1) 시급이 6,470원인 경우	일 임금액(B) ¹⁾	139,105	71,170	67,935	129,400	71,170	58,230
	월 임금액(C) (B×365/2/12)	2,115,555	2,164,754	2,066,356	1,967,958	2,164,754	1,771,163
예2) 시급이 6,500원인 경우	일 임금액(B) ¹⁾	139,750	71,500	68,250	130,000	71,500	58,500
	월 임금액(C) (B×365/2/12)	2,125,365	2,174,792	2,075,938	1,977,083	2,174,792	1,779,375
예3) 시급이 7,000원인 경우	일 임금액(B) ¹⁾	150,500	77,000	73,500	140,000	77,000	63,000
	월 임금액(C) (B×365/2/12)	2,288,854	2,342,083	2,235,625	2,129,167	2,342,083	1,916,250

¹⁾ 일 임금액(최저임금 기준) = 임금지급 기준시간(A) × 약정 시급액(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휴게(휴식)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휴게시간 안내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경비실, 초소 등을 떠나 휴식가능)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중에 경비실 등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오니, 근로자들이 경비실(초소)에 없더라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경비실을 휴게공간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에는 업무지시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형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	근무내용
07:00~12: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12:00~13:00	휴게시간
13:00~18: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18:00~19:00	휴게시간
19:00~01: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01:00~04:00	휴게시간
04:00~07: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유형 1일 2교대(주 · 야간조)

야간	근로시간	근무내용
주간조	07:00~12: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12:00~13:00	휴게시간
	13:00~19: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야간조	19:00~20: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20:00~21:00	휴게시간
	21:00~02: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02:00~05:00	휴게시간
	05:00~07:00	경비실(초소) 근무 또는 순찰근무

